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제220126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지역발전계획 공동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3

I.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제220126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지역발전계획 공동 수립 시행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같음) ② <u>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법¹⁾은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²⁾”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행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개요》

☐ 목적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
☐ 법적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조,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3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이에 대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

구 분	세 부 내 용
지역산업 육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지역주민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유관기관 협력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국토교통부(2023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 계획)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공개

□ 대상 기관 :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한 150개 이전공공기관

그간의 지역발전계획은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의 채용 육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전공공기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바와 같이 현행법은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규정³⁾할 뿐,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는 경우⁴⁾도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농업진흥청이 4개(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

필요한 부분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이나 사업규모 등을 정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참고 2023년도 분야별 지역발전 추진 실적

(출처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 150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6개 분야에 총 3,439건, 3조 6,800억원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

- (지역산업 육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
 - 대구지역 기업 창업경진대회(한국가스공사), 원도심 역사문화공간 보존사업(한국부동산원),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 전시공간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지역인재 채용) 지난해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대상 1,887명 중 766명(채용비율 4.59%, '23년 목표 30% 초과달성)을 지역인재 채용
 - 전체 106개 기관 중 52개 기관 목표 달성, 54개 기관은 의무채용 면제 대상
- (지역인재 육성) 체험형 인턴 운영(한국남부발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사업(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진로체험프로그램(한진KDN), 울산소재 초중등 미래에너지 교육(한국석유공사) 등
- (지역주민 지원) 생활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봉사활동·물품후원 등
 - 수산물 소비촉진 및 봉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UG스테이션사업(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보건공감 도서관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유관기관 협력)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기관간 포럼 및 협의체운영 등
 - 꿀벌 귀환 캠페인, 든든한끼(농어촌공사), 찾아가는 안전보건VR체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강사 출강(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추진
 - 실적은 1조 9,089억원으로 전년도 실적(2조 546억원) 대비 1,457억원(7.1%) 감소